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135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 다. 입법예고(2019.9.25. ~ 10.1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자연체험시설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감면 기한(2019. 12.1.)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221호, 2019. 7. 18.>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7221호, 2019. 7. 18.>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 ※ 재원부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로페이는 서울시의 사업인 서울페이로 시작했으나,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명칭이 변경(서울페이 → 제로페이)되었으며, 정부와 각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 제로페이는 2010년 후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에 금융기관 및 기업이 내놓은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소상공인이 모두 구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적인 결제 시스템을 정부주도(중소벤처기업부)로 구축하는 정책임.
- ※ 지난 제286회 정례회에서 제로페이 결제자에게 2019.12.31.까지 사용료의 100분 10을 감면하고자 의안번호 698번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를 개정하였음.
-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개요 〉

- 운영시설 : 8개소(165면, 660명), 3~11월(동절기 3개월 휴장)
- 운영방법 : 직영(지역주민 32명 채용/개소당 주·야간 2명)
- 이용방법 : 사전예약(<http://yeyak.seoul.go.kr>)
 - 이용료 : 1박 25,300원(4인 가족)
- 사업비 : 1,108백만원

〈 가족자연체험시설 운영현황 〉

캠핑장	횡성	포천	제천	철원	서천	함평	봉화	상주
개장일	13.7.6	15.5.22	15.9.25	16.6.25	17.4.29	17.3.18	18.6.29	19.4.
테크면수	20면	25면	20면	25면	15면	20면(오토)	20면(오토)	20면(오토)

- 평생교육국은 지난 6월 심의시 조례개정 후 즉시 제로페이를 해당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으나,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으로만 예약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외 다른 결제 방법이 없어 사용내역 및 감면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임.
- 10월 중순에야 관련 시스템(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다시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가 철저했는지 여부와 함께 근시안적 정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평생교육국은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로페이 감면 중단시 시민의 불만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이라 하고 있으나, 가족자연체험시설은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범위에 있지 않은바,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가족자연체험시설에서 제로페이 사용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심의 시에(제286회 임시회, 2019.6.17.) 약 3백만원이 감면보존액을 추계하였으나,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제로페이 결제내역은 보고되지 않고 있는바,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의 실적 또는 효과보다 총 결제건수 대비 제로페이 결정 비율과 총 결제액 대비 제로페이 결제액을 제로페이의 성과로 간주하고 있는바, 감면기간 연장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로페이의 성과를 소상공인 부담 경감보다, 결제건수와 결제금액으로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 대한 성과는 표시되고 있지 않음. 은행권 전자금융 결제수단별 결제액을 살펴보면, 제로페이는 0.01% 수준으로 미미한 실정임.

〈 은행권 전자금융결제수단별 현황 〉

(단위:백만원)

결제수단	전자금융결제 수단별 결제액		
	합계	비율	월 평균
제로페이	14,946	0.01%	1,865
신용카드	65,635,898	55.10%	1,028,899
체크카드	52,274,700	43.89%	567,935
선불카드	264,265	0.22%	3,211
직불카드	816,022	0.69%	1,504
기타	106,126	0.09%	241
합계	119,112,027	100.00%	1,601,772

※ 출처 : 금융감독원

·조사기간 : 2018.12.20.~2019.8.16. ·조사대상 : 18개(시중, 특수, 지방, 인터넷전문)

·카드사가 개별법인인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 신용·체크·선불카드 관련자료 제외

〈 2019년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제로페이 감면 손실액 추계 〉

(단위:천원)

구분	사업수입	제로페이 이용 결제 (30% 가정)	제로페이 이용시 세입감소액 (10% 할인, 감면기간 6개월)
금액	204,319	61,296	3,064

※ 출처 : 제287회 정례회(2019.6.17.) 청소년시설 관련 평생교육국의 비용추계

- 셋째, 금번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예산심의회가 있는 회기에 제출하면서 2020년 감면손실 보전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본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가족자연체험시설의 감면손실에 대해 보존할 수 없는바, 본 개정안에 대한 심의회가 실익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20년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제로페이 감면 손실액 추계 〉
(단위:천원)

구분	사업수익 (2018.1~12월)	제로페이 결제 (30% 가정)	2020년 제로페이 감면 예상액(10%할인)	비고
금 액	204,319	61,296	6,129	사용료는 2019년과 동일

- 넷째, 제로페이는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기존 감면자들에게는 ‘사용 경험을 통한 활성화’ 시책에서도 배제되는바, 평생교육국의 정책목표 달성 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섯째, 제로페이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수익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도 없는 것이 마땅하나,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소득공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사용료 감면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고, 추후 활성화를 위해 재차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바, 제로페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언제까지 서울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수수료 제로 정책을 유지하는 한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1년 연장이 아닌 지속적·장기적 재원소요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제로페이와 신용카드의 비교 〉

구분	제로페이	신용카드
결제방식	계좌이체	신용결제 후 정산
결제수수료	0.0%	0.8~2.3%
소득공제 혜택	40.0%	15.0%
제휴할인	없음	다수
의상거래	도입 논의 중	가능

○ 마지막으로, 제로페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울시만의 자치사무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서울시의 재정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가 그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